|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안건 적용 법률문제에 관한**  **약간의 규정**  (2001년 6월 19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180차 회의에서 통과; 2013년 2월 2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570차 회의에서 통과된 «최고인민법원의 <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안건 적용 법률문제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수정하는데 관한 결정»에 따라 1차 수정; 2015년 1월 19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41차 회의에서 통과된 «최고인민법원의 <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안건 적용 법률문제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수정하는데 관한 결정»에 따라 2차 수정; 동 수정내용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  특허권 분쟁 안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이하 "민법통칙"으로 약칭),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하 "특허법"으로 약칭),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1조** 인민법원은 아래와 같은 특허분쟁 안건을 수리한다.  1. 특허 출원권 분쟁 안건  2. 특허권 귀속 분쟁 안건  3. 특허권, 특허출원권 양도계약 분쟁 안건  4. 특허권 권리침해 분쟁 안건  5. 타인의 특허표기 사칭 분쟁 안건  6. 발명특허 출원 공개 이후, 특허권 수여 이전의 사용료 분쟁 안건  7. 직무발명창조 발명자, 설계자의 장려금 및 보수 분쟁 안건  8. 소송전 권리침해중지 및 재산보전 신청 안건  9. 발명자, 설계자 자격 분쟁 안건  10. 특허복심위원회의 출원기각유지결정 불복 안건  11. 특허복심위원회의 특허권무효 선고청구결정 불복 안건  12.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의 강제허가결정 불복 안건  13.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의 강제허가사용비 실시재결 불복 안건  14. 국무원 특허행정부문 재의결정 불복 안건  15. 특허업무 관리부문의 행정결정 불복 안건  16. 기타 특허 분쟁 안건  **제2조** 특허분쟁 1심 안건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실제 상황에 근거해 기층법원을 1심 특허분쟁 안건 관할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특허복심위원회가 2001년 7월 1일 이후 실용신안, 외관디자인 특허권 철회청구에 대해 판정한 복심결정에 불복하여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제4조** 특허복심위원회가 2001년 7월 1일 이후 실용신안, 외관디자인 특허출원에 대해 판정한 기각유지 복심결정이나, 또는 실용신안, 외관디자인 특허권 무효선고 청구에 대해 판정한 결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제5조** 특허권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권리침해 행위 발생지 또는 피고 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권리침해 행위 발생지는 다음과 같은 곳들을 포함한다. 발명, 실용신안 특허권을 침범해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허가, 판매, 수입 등 행위가 실시된 곳, 특허방법 사용행위가 실시된 곳으로서 이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획득한 제품을 사용, 판매허가, 판매, 수입 등 행위가 실시된 곳, 외관디자인 특허제품을 제조, 판매허가, 판매, 수입 등 행위가 실시된 곳, 타인의 특허표기를 가짜로 실시한 곳. 상술한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권리침해 결과가 발생한 곳.  **제6조** 권리침해 제품의 제조지와 판매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원고가 권리침해 제품 제조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매자에 대한 소송은 제기하지 않는 경우, 제조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조자와 판매자를 공동 피고인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판매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판매자가 제조자의 분지기구(지사)일 때, 원고가 판매지에서 권리침해 제품 제조자의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판매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7조** 원고가 1993년 1월 1일 이전에 특허를 출원하고 이 출원에 근거하여 수여된 방법 발명 특허권을 근거로 제기한 권리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5조, 제6조를 참조하여 관할권을 확정한다.  인민법원은 상술한 안건의 실체적 심리 중에는 법에 따라 방법발명 특허권은 제품에 연동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2009년 10월 1일 전(이 날은 제외)에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권에 대해 권리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는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작성한 검색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실용신안 또는 외관디자인 특허권에 대해 권리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는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작성한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안건 심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검색보고서 또는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소송 중지를 재결하거나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판결할 수 있다.  실용신안, 외관디자인 특허권에 대한 권리침해 분쟁 안건에서 피고가 소송 중지를 청구하는 경우, 답변기한 내에 원고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  **제9조** 인민법원이 수리한 실용신안, 외관디자인 특허권 권리침해 분쟁안건으로서, 피고가 답변기한 내에 이 항목 특허권의 무효 선고를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지해야 한다. 단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을 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  (1) 원고가 제출한 검색보고서 또는 특허권 평가보고서에서 실용신안 또는 외관디자인 특허권 무효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2)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그 사용기술이 이미 공지된 기술임을 충분히 증명한 경우  (3) 피고가 이 항목 특허권 무효 선고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증거 또는 근거의 이유가 확연하게 불충분한 경우  (4) 인민법원이 소송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제10조** 인민법원이 수리한 실용신안, 외관디자인 특허권 분쟁안건으로서, 피고가 답변기간 만료 후 이 항목 특허권 무효 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지하지 않는다. 단 심사를 거쳐 소송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인민법원이 수리한 발명특허권 권리침해 분쟁안건 또는 특허복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허권이 유지된 실용신안, 외관디자인 특허권에 대한 권리침해 분쟁 안건의 경우, 피고가 답변기간 내에 이 항목 특허권 무효 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인민법원이 소송중지를 결정하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피고의 유관 행위 중지명령을 청구하거나 권리침해 손해확대를 제지하는 조치 채택을 청구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유관 법률법규에 부합되면 소송 중지를 재결하는 동시에 관련 재결을 내릴 수 있다.  **제13조** 인민법원이 특허권에 대해 재산보전을 진행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협조 집행통지서를 송부하는데, 그 내용에는 협조집행 요구내용과 특허권 보전기간을 명시하고, 인민법원이 작성한 재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특허권 보전기간은 한 번에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협조집행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만약 계속 이 특허권에 대해 보전조치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기한 만료 전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별도로 계속 보전하는데 관한 협조 집행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보전기한 만료 전까지 송달되지 않는 경우 이 특허권에 대한 재산보전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인민법원은 질권이 설정된 특허권에 대해 재산보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질권자의 선순위 구상권은 보전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허권자와 피허가권자가 특허 독점실시 계약을 맺은 경우도 인민법원이 이 특허권에 대해 재산보전을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이미 재산보전을 진행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보전을 진행하지 못한다.  **제14조** 2001년 7월 1일 이전에 소속 단위의 물질 및 기술 조건을 이용해 발명창조를 완수하고 소속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간에 계약을 맺은 경우, 특허 출원자의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제15조** 인민법원이 특허권 권리침해 분쟁안건을 수리할 때, 권리 충돌 사항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합법자의 권익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  **제16조** 특허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선취득 합법권리에는 상표권, 저작권, 기업명칭권, 초상권, 주지상품특유포장 또는 의장사용권 등이 포함된다.  **제17조** 특허법 제59조 제1관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 요구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설명서와 부속 도안은 권리 요구 내용을 해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표현은 특허권의 보호범위가 권리 요구 기재된 모든 기술 특징에 따라 확정된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고, 또한 이 기술특징과 동등한 특징으로 확정된 범위를 포함한다.  동등한 특징이란 기재된 기술 특징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단으로서 대체로 동일한 기능을 달성하고 대체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또한 본 영역의 일반적인 기술인원이 권리침해 행위 발생 시 창조적 노동이 필요 없이 바로 연상해 낼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제18조** 특허권 권리침해 행위가 2001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특허법 규정에 따라 확정된 민사책임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개정 이후 특허법 규정에 따라 확정된 민사책임을 적용한다.  **제19조** 타인의 특허표기를 사칭하여 사용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63조 규정을 참조하여 민사책임을 확정할 수 있다. 특허업무 관리부문이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134조 제3관 규정에 의거하여 민사 재결을 내릴 수 있고, 민사 벌금액은 특허법 제63조 규정을 참조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20조** 특허법 제65조에 규정된 특허권자가 권리침해로 실제 피해를 입은 손실은 특허권자의 특허제품이 권리침해로 인하여 감소된 판매수량에 특허제품의 건당 합리적 이윤을 곱해 계산한다. 권리자의 판매 감소 수량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된 총 수량에 특허제품 건 당 합리적 이윤소득을 곱한 값을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입은 실제 손실로 간주한다.  특허법 제65조에 규정된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은 권리침해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총 수량에 권리침해 제품 건 당 합리적인 이윤 소득을 곱하여 계산한다. 권리침해자가 획득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권리침해자의 영업이윤으로 계산한다. 권리침해를 전업으로 하는 권리침해자에 대해서는 판매이윤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21조** 권리자가 입은 손실이나 권리침해자가 획득한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울 때, 특허 허가사용비가 있는 경우 이를 참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특허권 종류, 권리침해 행위의 성질과 그 정도, 특허 허가의 성질, 범위, 시간 등 요인을 근거로 하고, 이 특허 허가 사용비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배상 금액을 확정한다. 참조할 만한 특허 사용허가비가 존재하지 않거나 특허사용허가비가 확연하게 불합리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유형, 권리침해 행위의 성질과 정도 등 요소를 고려하여, 특허법 제65조 제2관 규정에 따라 배상금액을 확정한다.  **제22조** 권리자가 권리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지불한 비용에 대해,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65조에 따라 확정한 배상금액 외에 별도로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 특허권 권리침해 소송의 시효는 2년으로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인지하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권리자가 2년을 넘어서 소를 제기하는데 권리침해 행위가 소를 제기한 시기에 여전히 계속되는 경우, 이 항목 특허권 유효기한 내에 인민법원은 피고가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재결해야 한다. 권리침해 손해배상 금액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2년 전부터 계산한다.  **제24조** 특허법 제11조, 제69조에서 말하는 판매허락이란, 광고를 내거나 상점 진열창에 진열하거나 또는 전시회에서 전시하는 등 방식으로 상품판매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 인민법원이 특허권 권리침해 분쟁 안건을 수리할 때, 이미 특허업무 관리부문이 권리침해 또는 불침해를 인정을 마친 경우에도, 인민법원은 여전히 당사자의 소송청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제26조** 이전의 유관 사법해석과 본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  | **最高人民法院**  **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  **问题的若干规定**  （2001年6月19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80次会议通过；根据2013年2月25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570次会议通过的《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的决定》第一次修正；根据2015年1月19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41次会议通过的《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的决定》第二次修正；该修正自2015年2月1日起施行）  为了正确审理专利纠纷案件，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以下简称民法通则）、《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以下简称专利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和《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等法律的规定，作如下规定：  **第一条** 人民法院受理下列专利纠纷案件：  1.专利申请权纠纷案件；  2.专利权权属纠纷案件；  3.专利权、专利申请权转让合同纠纷案件；  4.侵犯专利权纠纷案件；  5.假冒他人专利纠纷案件；  6.发明专利申请公布后、专利权授予前使用费纠纷案件；  7.职务发明创造发明人、设计人奖励、报酬纠纷案件；  8.诉前申请停止侵权、财产保全案件；  9.发明人、设计人资格纠纷案件；  10.不服专利复审委员会维持驳回申请复审决定案件；  11.不服专利复审委员会专利权无效宣告请求决定案件；  12.不服国务院专利行政部门实施强制许可决定案件；  13.不服国务院专利行政部门实施强制许可使用费裁决案件；  14.不服国务院专利行政部门行政复议决定案件；  15.不服管理专利工作的部门行政决定案件；  16.其他专利纠纷案件。  **第二条** 专利纠纷第一审案件，由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所在地的中级人民法院和最高人民法院指定的中级人民法院管辖。  最高人民法院根据实际情况，可以指定基层人民法院管辖第一审专利纠纷案件。  **第三条** 当事人对专利复审委员会于2001年7月1日以后作出的关于实用新型、外观设计专利权撤销请求复审决定不服向人民法院起诉的，人民法院不予受理。  **第四条** 当事人对专利复审委员会于2001年7月1日以后作出的关于维持驳回实用新型、外观设计专利申请的复审决定，或者关于实用新型、外观设计专利权无效宣告请求的决定不服向人民法院起诉的，人民法院应当受理。  **第五条** 因侵犯专利权行为提起的诉讼，由侵权行为地或者被告住所地人民法院管辖。  侵权行为地包括：被诉侵犯发明、实用新型专利权的产品的制造、使用、许诺销售、销售、进口等行为的实施地；专利方法使用行为的实施地，依照该专利方法直接获得的产品的使用、许诺销售、销售、进口等行为的实施地；外观设计专利产品的制造、许诺销售、销售、进口等行为的实施地；假冒他人专利的行为实施地。上述侵权行为的侵权结果发生地。  **第六条** 原告仅对侵权产品制造者提起诉讼，未起诉销售者，侵权产品制造地与销售地不一致的，制造地人民法院有管辖权；以制造者与销售者为共同被告起诉的，销售地人民法院有管辖权。  销售者是制造者分支机构，原告在销售地起诉侵权产品制造者制造、销售行为的，销售地人民法院有管辖权。  **第七条** 原告根据1993年1月1日以前提出的专利申请和根据该申请授予的方法发明专利权提起的侵权诉讼，参照本规定第五条、第六条的规定确定管辖。  人民法院在上述案件实体审理中依法适用方法发明专利权不延及产品的规定。  **第八条** 对申请日在2009年10月1日前（不含该日）的实用新型专利提起侵犯专利权诉讼，原告可以出具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的检索报告；对申请日在2009年10月1日以后的实用新型或者外观设计专利提起侵犯专利权诉讼，原告可以出具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的专利权评价报告。根据案件审理需要，人民法院可以要求原告提交检索报告或者专利权评价报告。原告无正当理由不提交的，人民法院可以裁定中止诉讼或者判令原告承担可能的不利后果。  侵犯实用新型、外观设计专利权纠纷案件的被告请求中止诉讼的，应当在答辩期内对原告的专利权提出宣告无效的请求。  **第九条** 人民法院受理的侵犯实用新型、外观设计专利权纠纷案件，被告在答辩期间内请求宣告该项专利权无效的，人民法院应当中止诉讼，但具备下列情形之一的，可以不中止诉讼：  （一）原告出具的检索报告或者专利权评价报告未发现导致实用新型或者外观设计专利权无效的事由的；  （二）被告提供的证据足以证明其使用的技术已经公知的；  （三）被告请求宣告该项专利权无效所提供的证据或者依据的理由明显不充分的；  （四）人民法院认为不应当中止诉讼的其他情形。  **第十条** 人民法院受理的侵犯实用新型、外观设计专利权纠纷案件，被告在答辩期间届满后请求宣告该项专利权无效的，人民法院不应当中止诉讼，但经审查认为有必要中止诉讼的除外。  **第十一条** 人民法院受理的侵犯发明专利权纠纷案件或者经专利复审委员会审查维持专利权的侵犯实用新型、外观设计专利权纠纷案件，被告在答辩期间内请求宣告该项专利权无效的，人民法院可以不中止诉讼。  **第十二条**  人民法院决定中止诉讼，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请求责令被告停止有关行为或者采取其他制止侵权损害继续扩大的措施，并提供了担保，人民法院经审查符合有关法律规定的，可以在裁定中止诉讼的同时一并作出有关裁定。  **第十三条** 人民法院对专利权进行财产保全，应当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发出协助执行通知书，载明要求协助执行的事项，以及对专利权保全的期限，并附人民法院作出的裁定书。  对专利权保全的期限一次不得超过六个月，自国务院专利行政部门收到协助执行通知书之日起计算。如果仍然需要对该专利权继续采取保全措施的，人民法院应当在保全期限届满前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另行送达继续保全的协助执行通知书。保全期限届满前未送达的，视为自动解除对该专利权的财产保全。  人民法院对出质的专利权可以采取财产保全措施，质权人的优先受偿权不受保全措施的影响；专利权人与被许可人已经签订的独占实施许可合同，不影响人民法院对该专利权进行财产保全。  人民法院对已经进行保全的专利权，不得重复进行保全。  **第十四条** 2001年7月1日以前利用本单位的物质技术条件所完成的发明创造，单位与发明人或者设计人订有合同，对申请专利的权利和专利权的归属作出约定的，从其约定。  **第十五条** 人民法院受理的侵犯专利权纠纷案件，涉及权利冲突的，应当保护在先依法享有权利的当事人的合法权益。  **第十六条** 专利法第二十三条所称的在先取得的合法权利包括：商标权、著作权、企业名称权、肖像权、知名商品特有包装或者装潢使用权等。  **第十七条** 专利法第五十九条第一款所称的“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权的保护范围以其权利要求的内容为准，说明书及附图可以用于解释权利要求的内容”，是指专利权的保护范围应当以权利要求记载的全部技术特征所确定的范围为准，也包括与该技术特征相等同的特征所确定的范围。  等同特征，是指与所记载的技术特征以基本相同的手段，实现基本相同的功能，达到基本相同的效果，并且本领域普通技术人员在被诉侵权行为发生时无需经过创造性劳动就能够联想到的特征。  **第十八条** 侵犯专利权行为发生在2001年7月1日以前的，适用修改前专利法的规定确定民事责任；发生在2001年7月1日以后的，适用修改后专利法的规定确定民事责任。  **第十九条** 假冒他人专利的，人民法院可以依照专利法第六十三条的规定确定其民事责任。管理专利工作的部门未给予行政处罚的，人民法院可以依照民法通则第一百三十四条第三款的规定给予民事制裁，适用民事罚款数额可以参照专利法第六十三条的规定确定。  **第二十条** 专利法第六十五条规定的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可以根据专利权人的专利产品因侵权所造成销售量减少的总数乘以每件专利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计算。权利人销售量减少的总数难以确定的，侵权产品在市场上销售的总数乘以每件专利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可以视为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  专利法第六十五条规定的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可以根据该侵权产品在市场上销售的总数乘以每件侵权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计算。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一般按照侵权人的营业利润计算，对于完全以侵权为业的侵权人，可以按照销售利润计算。  **第二十一条** 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有专利许可使用费可以参照的，人民法院可以根据专利权的类型、侵权行为的性质和情节、专利许可的性质、范围、时间等因素，参照该专利许可使用费的倍数合理确定赔偿数额；没有专利许可使用费可以参照或者专利许可使用费明显不合理的，人民法院可以根据专利权的类型、侵权行为的性质和情节等因素，依照专利法第六十五条第二款的规定确定赔偿数额。  **第二十二条** 权利人主张其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合理开支的，人民法院可以在专利法第六十五条确定的赔偿数额之外另行计算。  **第二十三条** 侵犯专利权的诉讼时效为二年，自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知道或者应当知道侵权行为之日起计算。权利人超过二年起诉的，如果侵权行为在起诉时仍在继续，在该项专利权有效期内，人民法院应当判决被告停止侵权行为，侵权损害赔偿数额应当自权利人向人民法院起诉之日起向前推算二年计算。  **第二十四条** 专利法第十一条、第六十九条所称的许诺销售，是指以做广告、在商店橱窗中陈列或者在展销会上展出等方式作出销售商品的意思表示。  **第二十五条** 人民法院受理的侵犯专利权纠纷案件，已经过管理专利工作的部门作出侵权或者不侵权认定的，人民法院仍应当就当事人的诉讼请求进行全面审查。  **第二十六条** 以前的有关司法解释与本规定不一致的，以本规定为准。 |